

전공의 외부학술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번호	교육수련 - 3	제정일	2013. 3. 1.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24. 1. 5.
검토책임자	교육수련부장	규정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교육수련부	검토예정일	2026. 2. 28.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에 대하여 외부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참여)

- ① 전공의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전공의는 병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임상 교육, 연수 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사이버 필수교육 등)과 전공의 대상 직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본부 교육센터의 전공의 공통역량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인턴은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기초)과정을 이수하고, 레지던트는 수료할 때까지 매년 1회 전공의 공통역량 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하며 이수증을 교육수련부로 제출한다.
- ④ 외부학술 활동으로 학회 등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고 교육수련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한다.
- ⑤ 전공의 해당 학회의 참가는 연간 2회(춘계, 추계)에 한하며 체재비·교통비 및 등록비 등을 지원한다.
- ⑥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한병원협회에서 선발하는 당해연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 연수 과정 참가는 선발 절차에 따라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국고보조금 외의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병원에서의 비용 부담은 당해연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 연수 운영 지침으로 결정한다.
- ⑦ 기타 연수 교육 참가는 전공의 수련규칙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진료과장의 추천과 교육수련부장의 동의 및 병원장의 승인에 따라 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전공의 해외학회 참가는 국내외 상황과 국가 정책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해외학회 등 참가)

- ① 전공의는 외부학술 활동으로 해외학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장의 교육 출장 승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 ② 개인적으로 학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장 등

의 경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③ 해외학회가 아닌 개인적인 단기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진료과장 추천과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④ 해외학회 참가는 논문, 학회 구연 또는 포스터발표(제1저자) 등에 한하며 지도전문의 동행시 교육 출장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의 교육(임상 교육, 연수 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사이버 필수교육 등)을 미이수한 전공의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전공의는 해외학회 참가는 년 1회에 한하며, 최대 7일(토, 일요일 포함)까지 승인하되, 7일 초과시 초과된 일수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⑥ 전공의 해외학회 참가시 출장과 휴가를 포함한 최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해외학회 출장 경비 지원 대상자 선발)

① 해외학회 대상자는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의, 병원장이 승인한 경우 선발한다.

② 해외학회 참가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발표논문초록, 학회 스케줄, 초청장, 진료과장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당해연도 해외학회 참가 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발표논문초록, 학회스케줄, 초청장,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진료과장 추천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수련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규정 의결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하고, 병원장의 승인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⑤ 전공의 해외학회 출장 경비 등의 지원은 수련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출장 신청)

① 전공의는 학회에 참가하기 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학회 등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출장신청서 또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신청서 작성은 전공의 2명 이상이 동반 출장일 경우 대표자 1명이 작성하되, 동행인 명단을 기입하거나 명단을 서류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출장신청서에는 학회 출장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진료과 과장, 교육수련부장 및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공의 중 병무청으로부터 사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승인이 필요하면 교육수련부로 추천서를 작성 제출 승인받아야 하나 병무청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출장은 취소한다.

⑥ 출장신청서 승인으로 학회에 참가한 전공의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의 2명 이상 동반 참가하면 참석자 중 대표자 1명이 작성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전공의 외부학술 활동은 전공의 수련규칙과 병원 출장비 및 교육비 지급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장 승인으로 시행한다.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지침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병원장 김성욱
승 인 일	2024. 1. 5.